

日本の 環境基本法(案)

尹 丞 準*

〈目 次〉

- | | |
|-----------------|----------------------------|
| I. 日本의 環境政策 동향 | 4. 주요 쟁점사항 |
| 1. 환경정책의 변화과정 | III. 環境基本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
| 2. 새로운 환경정책의 전개 | IV. 向後展望—地球化時代의 새로운 環境政策— |
| II. 環境基本法(案) | V. 環境基本法(案) 全文 |
| 1. 제정배경 | |
| 2. 구조 및 특징 | |
| 3. 법률(안) 주요내용 | |

I. 日本의 環境政策 동향

1. 환경정책의 변화과정

일본의 환경정책의 변화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은 3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제 1기는 1955년부터 1975년에 걸친 공해규제시대로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위주의 정책을 편 결과 1973년경부터 환경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공해환경문제를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시기를 제1세대의 환경정책시대라 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公害對策基本法, 大氣汚染防止法 등 대부분의 환경관련법규가 완비되었다.

* 環境處 기술지원과장.

제 2기는 1976년경부터 1987년에 걸친 Amenity의 창조시대로서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던 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해문제에 대한 위기적 증상은 극복되었으나, 이후 일본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큰 정치적인 쟁점도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일본 정부도 지구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12월-1989년 6월에 열린 제24회 정기국회에서 “地球環境”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또한 1989년 11월에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外務省, 通産省, 環境廳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설치하였다. 이후 4차례의 관계각료회의에서의 논의끝에 1990년 10월 “地球溫暖化防止行動計劃”을 책정하여,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동시에 1990년 7월 지구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環境廳에 地球環境部를 신설하고, 국립공해연구소를 국립환경연구소로 개칭하는 한편, 동 연구소내에 “지구환경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지구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기를 제3세대의 환경정책시대라 불리운다.

2. 새로운 환경정책의 전개

제1세대의 공해규제시대 후 환경분야에서는 뚜렷한 정책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1988년 이후 일본에서는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廢棄物의 재활용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이다. 1990년부터 環境廳, 通産省 및 厚生省 등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1991년에는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두번째는 수은이나 PCB 등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1989년 채택, 1992년 발효)에 대한 국내법의 정비이다. 환경청, 통산성 및 후생성이 공동으로 『特定有害廢棄物の 輸出入規制에 관한 法律』을 입안하였다.

세번째는 野生動植物의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다. 일본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973년 채택, 1975년 발효)에 1980년 가입하였고, 동 협약 가입에 따라 국내에서의 특정야생동식물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1987년 『野生動植物의 讓渡去來規制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그 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청은 1992년 3월 『질멸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보존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동년 5월 동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6월 5일자로 공포되었다.

네번째는 도쿄, 오오사카, 및 요코하마 주변의 질소산화물(NOx)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동차배기가스 규제입법이다. 이는 1992년 5월 공포된 법안으로서 버스, 트럭 등 디젤자동차를 가솔린자동차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또한 자동차사용의 합리화를 담고 있다.

초안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유력한 저감수단으로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總量規制가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지역내에서 주행량의 측정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다. 환경청에서는 동법이 실시됨으로 해서 2000년 까지는 질소산화물의 환경기준이 모든 지역에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다. 1991년 10월 타케시타 수상은 유엔 環境開發會議(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후의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새

로운 법률제정이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청 장관은 환경청의 자문기구인 중앙공해대책심의회와 자연환경보전심의회에 “지구화시대의 환경정책의 실태”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미야자와 수상도 1992년 4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의 기초가 되는 『環境基本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환경청장에게 법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청장은 동년 10월 법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993년 정기국회에 동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衆議院이 解散되는 관계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II. 環境基本法(案)

1. 제정배경

일본에서는 지금까지의 고도성장기에 환경오염이나 자연파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됨에 따라 1967년에 『公害對策基本法』을 제정하였고, 1970년에는 공해 관련 14개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바 있으며, 1972년에는 『自然環境保全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극심했던 공해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후의 경제발전예 따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이 확산되고 인구 및 사회·경제활동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기오염, 생활하수에 의한 수질오염등 도시 생활형 공해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환경예의 부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야생동식물종의 감소 등 범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구환경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인류의 생존기반인 지구의 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환경은 생태계의 미세한 균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유한한 것으로서 인류는 이러한 환경을 그 생존기반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후세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인류는 환경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동시에 환경예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류가 현재의 환경의 혜택을 향유함과 동시에 장래세대에게도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를 적절하게 보전해야 한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상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科學知識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 각자는 환경에의 負擔가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의 공평한 역할분담하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현 경제사회체제와 생활양식을 재평가하고 환경에의 負擔가 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동참하여야 한다.

또한 지구환경보전은 인류공동의 과제임과 동시에 우리가 현재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장래 세대에까지 물려 주기 위하여 불가결한 과제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가 국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불 때, 일본의 경험과 능력에 입각하여 세계각국과의 협력하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환경보전의 기본적이념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골격을 갖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구조 및 특징

1) 구조

환경기본법은 3장 4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으로서 환경으로부터의 혜택의 향유와 계승 등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과 국제협력을 통한 地球環境保全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세가지 이념을 정함과 동시에,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환경보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에서는 環境基本計劃, 環境基準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條例에 따라 시행되어 오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이용촉진, 환경교육, 민간단체의

활성화조치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단으로서 비용부담 및 재정조치와 관련하여 原因者負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자문기관으로서 환경심의회와 공해대책회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인 都道府縣 환경심의회와 市町村 환경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환경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공해대책기본법』은 폐지되고, 이에 따라 『공해대책기본법』과 관계가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자치법』 및 『환경청부설법』 등 18개 법률을 정비하게 된다.

2) 특징

현재 일본에는 교육기본법, 농업기본법, 토지기본법, 재해복구기본법, 원자력기본법 등 12개의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 『환경기본법』이 추가되면 13개의 기본법이 있게 된다.

동법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 지속가능하면서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성장의 추구하고 지구환경보전 노력에의 적극적인 동참이라는 3대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기존의 『공해대책기본법』과 비교해볼 때 다음의 몇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과제를 설정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하며 환경에 부하를 적게 주는 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와 국민 등이 공동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보전노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대규모 오염물질 발생원이나 특정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위주로 하는 종래의 규제중심의 정책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보전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제도(economic instruments)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재정금융상의 지원외에 배출부과금제도를 병행하는 것이다.

셋째,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planning, designing and drafting)에서 환경보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環境影響評價制度를 도입한 것이다.

넷째, 환경의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문제이다. 기존의 『공해대책기본법』에서는 공해방지, 오염된 환경의 복원조치 및 공해피해의 보상은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개발사업 등 환경을 이용할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공해방지를 위하여 환경변화가 사람의 건강, 동식물의 생식·생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토록 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감시·측정토록 하고 있다.

여섯째는, 기업체와 국민의 환경보전노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육성하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차지하는 일본의 지위를 감안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울러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3. 법률(안)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법률은 환경보전법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등의 책무 및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및 미래의 국민들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가) 환경혜택의 향유 및 계승 등

환경보전은 환경을 건전하고 보전하여 사람들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인류의 존속기반인 환경이 인간의 활동에 따른 환경에의 부하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인간이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개발이 가능한 사회구축 등

환경보전은 사회경제활동 등에 따른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 모든 사람의 공평한 역할분담하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풍요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과학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보전상의 피해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제적 협력에 의한 지구환경보전의 적극적 추진

지구환경보전은 인류공동의 과제이자 미래에도 국민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과제이며, 일본의 경제가 국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하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부응해서 국제적인 협력하에 지구환경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責務

(가) 국가의 책무

국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에 따라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전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를 갖는다.

(나)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의 시책과 각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실시할 책무를 갖는다.

(다) 사업자의 책무

i)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사업활동에 발생하는 매연, 오수, 폐기물 등 공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갖는다.

ii) 사업자는 환경보전상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건의 제조 등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갖는다.

iii) 또한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품등이 사용 또는 폐기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재생자원등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원재료, 공정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v) 사업자는 환경에의 부하저감과 기타 환경보전에 자발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갖는다.

(라) 국민의 책무

i) 국민은 기본이념에 따라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따른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 또한 환경보전에 자발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갖는다.

4)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및 재정적인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연차보고 등

정부는 매년 환경상태와 정부의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방사성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등의 방지

방사성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원자력법기본법과 기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1) 시책책정 등에 관한 지침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는 각종시책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i) 사람의 건강보호, 생활환경 보전 및 자연환경이 적절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환경의 자연적 구성요소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것.

ii) 生物多樣性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삼림·농지·바다의 다양한 자연환경이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것.

iii) 사람과 자연의 풍부한 접촉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환경기본계획

(가) 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내각총리대신은 중앙환경심의회 의견을 들어서 환경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閣議의 결정을 구하는 등 환경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3) 환경기준

정부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소음에 관한 환경상의 조건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을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기준을 정한다.

4) 특정지역에서의 공해방지

내각총리대신은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공해를 방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계 都道府縣知事에게 환경기본계획을 토대로 공해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국가가 강구해야할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등

(가) 국가시책의 책정 등에 관한 배려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시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보전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의 추진

국가는 토지형질의 변경, 공작물의 신설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조사, 예측 또는 평가를 실시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에 대한 사항을 적절하게 배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국가는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i)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또는 진동의 발생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ii) 공해가 심각하거나 또는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iii) 자연환경보전이 특히 필요한 구역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iv)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 등의 적절한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v) 동시에 공해 및 자연환경보전상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동시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

(라) 환경보전상 지장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

i) 국가는 환경에 부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활동(이하 負荷活動이라한다)을 하는 자가 그 활동에 관련된 환경에의 부하저감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장하고,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負荷活動을 행하는 자에게 경제적인 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제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ii) 국가는 부하활동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당해인이 자발적으로 환경에의 負荷低減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 그 효과가 인정되고 국제적으로도 장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책에 따른 효과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절히 조사 및 연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동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적인 제휴를 고려하도록 한다.

(마) 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정비 및 기타 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보전상 지장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정비와 야생동식물의 보호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 등 환경보전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바) 환경에의 負荷低減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의 이용촉진

국가는 사업자에 대하여 물건의 제조등 사업활동영위시 사전에 제품이 사용·폐기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사업자가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대하여 적절하게 배려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원재료, 제품 등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사)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학습 등

국가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학습의 진흥 및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이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에 관한 의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아)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국가는 사업자와 국민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자) 정보의 제공

국가는 교육과 학습의 진흥 및 자발적인 활동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의 보호를 배려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차) 조사의 실시

국가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의 책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카) 감시체제의 정비

국가는 환경상황의 파악 및 시책의 적절한 실시에 필요한 감시, 관측체제 정비에

노력한다.

(타)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는 환경보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험연구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파) 공해에 관한 분쟁처리 및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地球環境保全 등에 관한 국제협력

(가)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i) 국가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외에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 및 국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통하여 인류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ii) 국가는 지구환경보전 및 개발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나) 감시, 관측 등에 관한 국제협력

국가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환경상황의 감시, 관측 및 측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제휴를 확보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지방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국가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의한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라) 국제협력에 대한 배려

국가는 국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지구환경보전 등을 배려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자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지역에 대한 지구환경보전 등이 적절히 배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7)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시책에 준하는 시책 및 각 지방공공의 자연적 및 사회적 여건에 따른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8) 費用負擔 및 財政措置 등

(가) 원인자부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공해 또는 자연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사업을 실시할 경우 당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사업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고 공평하게 부담시키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수익자부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구역에서 이의 보전을 위한 사업실시에 따라 현저하게 이익을 얻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자의 수익한도내에서 당해 사업의 실시에도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고 공평하게 부담시키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정조치 등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등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 3 장 環境審議會 등

1) 中央環境審議會

환경청에 중앙환경심의회를 두고,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조사·심의함과 동시에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둔다.

2) 都道府縣 環境審議會

都道府縣은 都道府縣 환경심의회를 두고,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다.

3) 市町村 環境審議會

市町村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市町村 환경심의회를 둘 수 있다.

4) 공해대책회의

총리부에 특별기관으로서 공해대책회의를 두어서 공해방지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에 대한 기본심의 또는 시책실시를 추진하게 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둔다.

4. 주요 쟁점사항

환경청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고, 인류의 진정한 미래의 이익을 위하여 새로운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법(안)』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정부의 전통적인 割據主義와 각종 이익단체의 지원을 받는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삭제되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선언적인 성격을 갖는 법안으로 변질되었다.

UNCED에서 논의된 “환경과 개발의 統合(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관련하여 환경청에서는 환경을 적절하게 보전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보다 환경보전에 더 많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通産省, 建設省 등 개발부처의 반대로 이러한 개념은 거의 퇴색되어버렸다.

環境影響評價制度는 리우정상회담에서 특히 강조된 바 있고 또한 리우선언에서도 각국이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나, 기본법에서는 형식적인 반영에 그치고 말았다. 환경청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태국 등 아시아국가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제도임을 주장하였으나, 通産省을 비롯한 개발부처와 기업체에서는 동 제도가 실시되면 일본의 경제성장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환경청에서는 일본과 지구촌 미래세대의 진정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정책을 실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보전목표와 각 부처의 환경

관련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본의 국가종합개발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도 역시 通産省 등 개발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분야별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각 부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경제개발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보전노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세제도(taxation) 및 부과금(monetary charge or levies)의 도입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環境稅(environmental tax)나 炭素稅(carbon tax)의 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본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III. 環境基本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환경기본법」이 제정되면 1967년에 제정된 「公害對策基本法」은 폐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해대책기본법」에서의 “환경기준”과 “공해방지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 및 “공해방지계획”으로 간주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은 새로운 「환경기본법」 제정에 따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즉, 기존 법의 목적이 자연환경의 보전에 한정되었던데 반해, 개정안에서는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자연환경의 혜택을 향유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에게도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고 또한 지역개발 사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배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될 것이다.

기타 기존 「공해대책기본법」의 조항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자연공원법」, 「하수도법」, 「환경사업단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탁방지법」, 「공해분쟁처리법」, 「공해방지사업비 사업자부담법」,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농지토양의 오탁방지등에 관한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한 국가재정상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노동안전위생법」,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호수, 늪 수질보전특별조치법」, 「특정지역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총량삭감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총리부설치법」 및 「환

『환경설치법』 등 17개의 법률중 일부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向後展望

— 地球化時代의 새로운 環境政策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일본의 환경정책중 지구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여러가지의 지구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위하여 「환경기본법(안)」을 제정하였고, 또한 1993년 환경청의 업무 계획에서도 지구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환경정책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취급되고 있다. 참고로 1993년 일본환경청의 주요 시책 및 관련 예산은 표 1과 같다.

표 1. 1993년 주요 시책 및 관련 예산

주요시책	예산액(백만엔)		전년대비 증감액
	1992년	1993년	
총계	58,058	63,673	5,588 (9.6% 增)
1. 지구화시대의 새로운 환경정책의 종합적 추진	2,568	4,683	2,115
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공헌의 추진	1,062	1,426	364
3. 풍요로운 자연보호와 적정이용의 추진	5,414	6,825	1,411
4. 대기·수질 토양환경보전의 강화	1,659	1,955	296
5. 환경보건시책의 추진	24,071	24,471	400
6. 환경연구의 확충강화	10,337	11,043	706
7. 환경행정의 기반강화	6,109	6,501	392

그리고 1993년에 환경청에서는 지구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환경정책을 실시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의 7개 과제를 선정,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1) 새로운 환경정책의 계획적 추진

(가) 『Agenda 21·Japan (가칭)』의 수립·추진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목표로 한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과 국가별 행동계획수립에 관한 『Munchen Summit』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구체적 행동계획인 『Agenda 21·Japan』을 정부간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수립한다.

(나) 『환경기본계획 (가칭)』 수립 착수

『Agenda 21·Japan』을 바탕으로 하여, 지구환경보전, 생물다양성보전 등을 포함한 환경보전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으로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착수한다.

2) 지역에서의 새로운 환경정책의 전개

Earth Summit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Local Agenda 21 (가칭)』의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한다.

3) 민간환경보전활동의 지원·추진

(가) 地球環境基金(가칭)의 설치

민간에 의한 지구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사업단에 국가 및 민간의 據出에 의한 지구환경기금을 설치함과 동시에, 동 기금에 據出하는 민간 부문에 대하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나) 환경교육·환경보전활동의 추진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깊게하고, 환경을 배려한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국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과 정보제공 등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기업에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지구온난화방지대책의 강화

『기후변화협약』의 조기실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을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구온난화방지대책의 추진을 강화한다. 또한 온실가스의 상세한 실태파악에 착수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온난화방지대책을 지원·강화한다.

5)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보전의 종합적 추진

『생물다양성협약』을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생물다양성보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생물다양성의 현상을 파악한다.

(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보전대책 추진

『멸종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 유통 등의 규제, 서식지의 보호관리의 추진, 보호증식사업 등 각종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6) 지구환경에의 負荷低減

(가) 酸性雨 대책의 종합적 추진

제3차 산성우대책조사를 추진하여 산성우와 원인물질의 정량관계의 해명, 육수·토양·식생 등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 각종 영향 등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그 실태해명과 대응조치 등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산성우대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일본의 감시측정망을 충실하게 강화하고, 동아시아지역의 감시네트워크에 대한 구상을 추진한다.

(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대책의 추진

1992년 5월에 발효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조속 가입을 추진하고, 『특정유해폐기물의 수출입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조건과 가입국의 규제상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한다.

(다) 해양오염대책의 추진

『런던뎀핑협약』의 가입국회의에서 1995년말까지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처분

의 단계적 금지 결의에 따라 해양투기 처분의 기준을 재조정한다.

(라) 오존층보호대책의 추진

『오존층보호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한 염화불화탄소(프레온가스)등의 규제강화에 대처함과 동시에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마) 환경에의 부하저감 방안의 검토 추진

i)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제적 수단의 도입을 검토한다.

ii) 循環型사회시스템의 형성을 향한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계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 새로운 환경오염의 사전방지 강화

(가) 환경유해물질대책의 종합적 강화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複數媒體汚染의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규제되고 있지 않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국제적 지식의 진전상황을 참작하여 체계적인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수질환경기준의 대상항목, 『水質汚濁防止法』의 규제대상물질 및 폐기물의 최종처분 기준의 규제항목을 추가한다.

(나) 첨단기술대책의 추진

첨단기술의 개발·이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생물의 이용과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신기술의 개발·이용에 환경보전적 관점에서의 평가지침을 수립한다.

V. 環境基本法(案) 全文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사정의 변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환경문제의 현황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절 시책의 책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절 환경기본계획

제3절 환경기준

제4절 특정지역에서의 공해 방지

제5절 국가가 강구해야 할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등

제6절 지구환경보전등에 관한 국제협력 등

제7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제8절 비용부담 및 재정조치 등

제3장 환경심의회 등

제1절 환경심의회

제2절 공해대책회의

부 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또한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및 미래의 국민들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률에서 “환경에의 負荷”라 함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환경에 가해지는 영향으로서 환경보전상 지장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지구온난화 또는 오존층파괴의 진행, 해양오염, 야생동식물종의 감소와 기타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으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 국민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公害”라 함은 환경보전상의 지장 중 사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범위한 대기오염, 수질오염(수질 이외의 물의 상태 또는 水低의 質이 악화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토양의 오염, 소음·진동, 지반침하(광물의 채굴을 위한 토지의 굴착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악취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 동식물 및 생활환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환경혜택의 향유 및 계승 등) 환경보전은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됨으로 해서 인류가 존속기반이 되는한, 환경이 인간의 활동에 따른 환경에의 부하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현재 및 후세 세대가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의 혜택을 향유케 함으로써 인류의 존속기반인 환경이 장애에도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시

행되어야 한다.

제4 조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개발이 가능한 사회구축 등) 환경의 보전은 사회 경제활동 등에 따라 환경에의 부하를 가능한 한 저감하고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 모든 사람의 공평한 역할분담하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여지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풍요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건전한 경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과학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보전상의 피해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 조 (국제적 협력에 의한 지구환경보전의 적극적 추진) 지구환경보전이 인류공동의 과제이자 장래에도 국민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과제이며, 아국의 경제사회가 국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지구환경보전은 우리의 능력을 소생시키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아국이 차지하는 지위에 부응해서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 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3조에 정한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기본이념”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를 갖는다.

제7 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공공단체의 자연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를 갖는다.

제8 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연·오수·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이외의 공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갖는다.

②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환경보전상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건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 이외의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품 또는 이외의 물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갖는다.

③제2항에서 정해진 것 이외에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환경보전상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건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나 이외의 사업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품 또는 그 이외의 물건이 사용되거나 폐기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그 사업활동이 재생자원과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원재료, 공정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에의 부하저감과 이외의 환경보전에 자발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갖는다.

제9조 (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기본이념에 따라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국민은 기본이념에 준해서 환경보전에 자발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갖는다.

제10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적인 조치와 그 이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차보고 등) ①정부는 매년 국회에 환경상황 및 정부가 환경보전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년 전항의 보고와 관련된 대하여 환경상황을 고려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등의 방지) 방사성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원자력기본법(1955년 법률 제186호)과 기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 시책

제 1 절 시책책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기본시책)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는 기본이념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각종 시책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보전되고 자연환경이 적절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대기·수질·토양과 이외의 환경의 자연적 구성요소가 양호한 상태로 보전·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생태계 다양성의 확보, 야생동식물종의 보존과 기타 생물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산림·농지·해변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사람과 자연이 자연스러운 접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 2 절 환경기본계획

제14조 (환경기본계획) ①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
2. 전호에 언급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내각총리대신은 중앙환경심의회 의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각의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4. 내각총리대신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각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기본계획을 공포하여야 한다.

5. 전 제2항의 규정은 환경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 3 절 환경기준

제15조 (환경기준) ①정부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과 관련된 환경상의 조건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기준을 정한다.

②전항의 기준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유형을 제정하고 각각의 유형을 적용하는 지역 또는 수역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 또는 수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都道府縣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적절한 과학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시 개정을 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이 장에서 정한 시책이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이하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 이라 한다)을 종합적이고 유효적절하게 강구함으로써 제1항의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절 특정지역의 공해방지

제16조 (공해방지계획의 작성) ①내각총리대신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都道府縣지사에게 당해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할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과 이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 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하도록 지시한다.

1. 현재 공해가 심각해서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공해를 방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인구 및 산업의 급속한 집중과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거나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공해를 방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전항의 기본방침은 환경기본계획을 토대로 책정하도록 한다.

③관계 都道府縣知事は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동항의 기본 방침에 의거 공해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내각총리대신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및 제③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공해대책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내각총리대신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계 都道府縣知事の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공해방지계획의 달성추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공해방지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절 국가가 강구해야 할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등

제18조 (국가의 시책 책정 등에 있어서의 배려)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보전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영향평가의 추진) 국가는 토지형질의 변경, 공작물의 신설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사업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조사, 예측 또는 평가를 실시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에 대하여 적절하게 배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0조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①국가는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또는 진동의 발생,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의 채취와 기타 행위에 관하여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는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의 조치.

2. 토지이용에 관하여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 및 공해가 심각하거나 또는 심각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

3. 특히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설, 산림의 벌채와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그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

4. 채취·포획·손상 및 기타 행위에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 지형·지질 또는 온천원과 기타 자연보호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하여 그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

5. 공해 및 자연환경의 보전상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

②전항에 정한 것 이외에 국가는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조치에 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보전상 지장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 ①국가는 환경에 부하를 발생시키는 활동 또는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활동(이하 “부하활동”이라 한다)를 하는 자가 그 활동에 관련된 환경에의 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장함으로써 환경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하활동을 행하는 자의 경제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제적 조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②국가는 부하활동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당해인이 스스로 그 부하활동에 대한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노력하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장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책에 관한 조치를 강구 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상의 지장에 대한 방지효과, 아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적절히 조사·연구함과 동시에 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에 대한 시책을 활용해서 환경보전상 지장의 방지하는데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그 조치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효과가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연계를 고려하도록 한다.

- 제22조 (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정비 및 기타 사업의 추진)** ①국가는 완충지대와 기타 환경보전상 지장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정비 및 오니의 준설,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기타 환경보전상 지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②국가는 하수도,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교통시설(이동시설을 포함)과 기타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③국가는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정비와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④국가는 전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적절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및 이들 시설과 관련된 환경보전상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 제23조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의 이용촉진)** ①국가는 사업자에 대하여 물건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 및 기타 사업활동시 사전에 당해 사업활동에 관련된 제품 및 기타 물건이 사용되거나 또는 폐기됨으로써 미치는 환경에의 부하를 사업자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그 물품과 관련된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대하여 적절히 배려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②국가는再生资源과 기타 환경에의 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원재료, 제품, 서비스 등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제24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학습 등)** 국가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과 더불어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활동에 충실함으로써 사업자 및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의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제25조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국가는 사업자,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가 자발

적으로 행하는 녹화활동, 재생자원에 관한 회수활동 등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6조 (정보의 제공) 국가는 제24조의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과 더불어 전조의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의 보호를 배려하고 환경상태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7조 (조사의 실시) 국가는 환경상태의 파악, 환경변화의 예측 또는 환경변화에 의한 영향의 예측에 관한 조사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28조 (감시등 체제의 정비) 국가는 환경상태를 파악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순시, 관측, 측정, 시험 및 검사체제 정비에 노력한다.

제29조 (과학기술의 진흥) ① 국가는 환경변화 메카니즘의 해명, 환경에의 부하저감과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에 주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개발에 관한 과학기술 등 환경보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한다.

② 국가는 환경보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체제의 정비, 연구개발의 추진 및 기타 성과의 보급, 연구자의 양성과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30조 (공해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및 피해의 구제) ① 국가는 공해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알선, 조정 등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기타 공해와 관련된 분쟁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해와 관련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절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 등

제31조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①국가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적 연계를 확보하는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보전하고 국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이하 “개발도상지역의 환경보전 등”이라 한다)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②국가는 지구환경보전 및 개발국가의 환경보전 등 (이하 “지구환경보전 등”이라 한다)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가의 육성, 자국 이외의 지역의 환경상태 및 기타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보수집, 정리 및 분석과 그밖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32조 (감시, 관측 등에 대한 국제연계의 확보 등) 국가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환경 상태의 감시, 관측 및 측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연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3조 (지방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①국가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②국가는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단체등에서 자국 이외의 지역에서 지구환경보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실시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활

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국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배려) ①국가는 국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구환경보전 등을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국이외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활동이 행하여지는 지역에 대한 지구환경보전 등이 적절히 배려될 수 있도록 당해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 7 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제35조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지방공공단체는 제5절에서 정한 국가시책에 준하는 시책 및 그밖의 지방공공 단체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여건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이 경우 都道府縣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시책과 市町村에서 실시하는 시책을 종합조정한다.

제 8 절 비용부담 및 재점조치 등

제36조 (원인자부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공해 또는 자연환경보전상의 지장(이하 본조에서 “공해 등에 대한 지장”이라 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본조에서 “공적사업주체”라 한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해등에 대한 지장의 신속한 방지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기타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사업이 공적사업주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공해 등에 대한 지장의 정도 및 당해 활동이 공해 등에 대한 지장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사업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고 공평하게 부담시키기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37조 (수익자부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특히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구역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현저하게 이익을 얻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자에게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고 공평하게 부담시키기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38조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정조치 등)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거나 또는 실시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및 그밖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환경심의회 등

제 1 절 환경심의회

제39조 (중앙환경심의회) ① 환경청에 중앙환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환경기본계획에 관하여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의 처리.
2.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조사·심의.
3. 환경청장관 또는 관계대신의 자문에 응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 및 심의.
4.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권한에 속하는 사무.

③ 심의회는 전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 환경청장관 또는 관계 대신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0조 (중앙환경심의회) ① 심의회는 위원 88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 및 특별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 대신이 임명한다.
- ④ 위원 및 특별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⑤ 전항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제41조 (都道府縣 환경심의회) ① 都道府縣은 당해 도도부현 구역에서의 환경보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都道府縣 환경심의회를 둔다.

- ② 都道府縣 환경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都道府縣의 조례에서 정한다.

제42조 (市町村 환경심의회) 市町村은 당해 구역내의 환경보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市町村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市町村 환경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 2 절 공해대책회의

제43조 (설치 및 소관업무) ① 총리부에 특별기관으로서 공해대책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1. 공해방지계획에 관하여 제116조 제4항에 규정된 사무의 처리.
2. 전호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으로서 기본적인 고도 종합적인 기획에 관한 심의 또는 시책실시의 추진.
3.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타법령의 규정에 따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제44조 (조직 등) ① 회의는 회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 ④회의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⑤간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 ⑥간사는 회의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장 및 위원을 보조한다.
- ⑦회의의 사무는 환경청에서 처리한다.
- ⑧전항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에서 정한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